

제244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(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)



행정재경위원회
전문위원

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334호
- 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3. 5. 31.
- 라. 회부일자 : 2023. 5. 31.

2. 제안이유

다양한 환경적 요인과 유전적 요인으로 갑상선질환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구 보건소에서는 갑상선 기능검사(TFT : Thyroid Function Test)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갑상선 기능 검사를 검사항목에 추가하고, 그 밖의 각종 검사와 수수료 및 진료비 항목을 상위법령에 맞게 현행화하여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항목 삭제(안 제2조 제2항 제2호, 제4조 삭제, 별표)
- 나. 갑상선 기능검사 항목 추가 및 수가 규정 변경(안 별표)
- 다. 수수료 및 진료비, 검사 관련 항목 일부 삭제·현행화(안 제3조 제2항 제7호, 제5조, 별표)

4. 관계법령

- 「지역보건법」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

5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,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각종 검사와 수수료 및 진료비 기준을 현행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
- 구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 서비스 욕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검사 항목을 신설하고 의료수가를 현행화함으로써 구민에게 다양한 검진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겨지나
- 관계법령 및 보건복지부 고시 등 개정사항이 시행된지 일정기간 경과하였음에도 일부 항목 변경내역을 적기에 반영하지 않은 점은 보건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향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.

붙임 : 관계법령 1부. 끝.

지역보건법

[시행 2023. 3. 28.] [법률 제19305호, 2023. 3. 28., 일부개정]

제25조(수수료 등) ① 지역보건의료기관은 그 시설을 이용한 자,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지역보건법 시행규칙

[시행 2019. 10. 3.] [보건복지부령 제667호, 2019. 8. 19., 일부개정]

제10조(수수료 등)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와 진료비는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「전자정부법」 제9조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. <개정 2019. 8. 19.>